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폐지

특혜 아닌 '주부권' 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17개 여성단체모임 '남녀평등 세제개혁 여성단체 모임' 결성, 국회청원 준비

금융실명제 실시보완대책에 뒤이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17개 여성단체가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결성하고 오는 20일 공청회 개최와 함께 국회청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해 한국여성정치연맹, 여성민우회, 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 등 17개 여성단체가 참여해 지난 7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결성한 여성단체모임은 김정례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와 가정법률상담소 이태영 소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한 이후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여성모임측은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여성계는 배우자간의 상속, 증여세 면세운동을 계속해 왔지

만 그때마다 정부는 91년 세법 개정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제폭을 다소 조정하는 것으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처럼 호도시켜 왔다"며 "상정된 세제개편안처럼 주부에게 혜택을 주듯이 이뤄지는 세법개정은 잘못된 것이며 공제폭을 단순히 상향조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은 함께 이룩한 것이므로 부부공동소유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모두 남편의 것으로만 인정되어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면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해 온데 대해 "아내에게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것은 주부가 경제무능력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간에 상속세를 부과

는 건 아내의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모임측은 "정부는 그동안 증여, 상속세를 면제하면 세수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아내에게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탈세수단이 된다는 것을 배우자간 세금부과의 명분으로 말해 왔지만,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세금징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96년 종합과세 실시를 기해 배우자간의 재산이동에 대한 탈세문제가 제거되므로 배우자간의 상속, 증여세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모임측은 ▲배우자간 상속세·증여세 면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에 의해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

서를 각 당에 제출하고 청원을 위한 전국민 서명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가정법률상담소 김숙자 부소장은 "이는 남편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하는데 대한 특혜로서 공제의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간 불평등한 세제로 인한 실종되었던 주부의 정당한 몫을 찾아 주부권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현행 별산제 하에서도 이같은 증여·상속세의 폐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의 법률심의를 10월 중순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여성계의 청원서 제출은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순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희 기자>